



“어찌 이 날을 잊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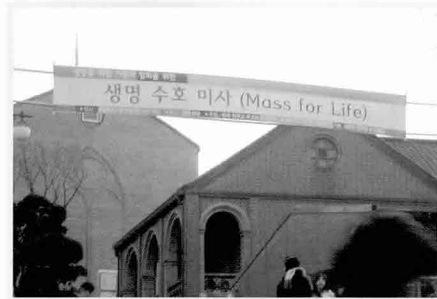


송열섭(가시미로) 신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생명31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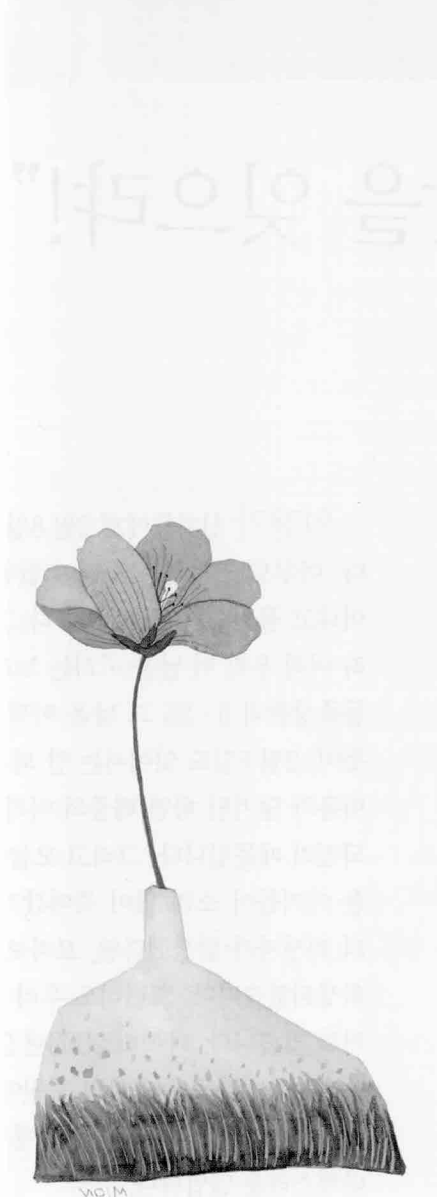
언젠가 신자들에게 2월 8일이 무슨 날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6월 25일은 무슨 날이냐고 물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라는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 민족이 겪은 동족상잔의 6·25 그 날을 어찌 잊겠습니까? 6월 25일을 잊을 수 없듯이, 2월 8일도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1973년 2월 8일, 이유가 닿기만 하면 태중의 아기를 없애도 좋다는 낙태허용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법으로 인하여 수많은 아기들이 소리 없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6·25전쟁으로 수백만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면, 모자보건법을 통하여 수천만의 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2월 8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2003년 2월 7일 저녁에 생명 31운동이 태동되면서 2월 8일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기억하고 있고, 2008년에도 이를 기억하여 2월 4일에 명동성당에서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 것은 꼭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1973년 1월 22일에 낙태 허용(Roe v. Wade)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뒤 미국의 생명수호운동 단체들은 해마다 그때를 기억하였고, 그 때가 되면 국가 성지인 원죄 없으신 성모 대성당에서 수십 명의 주교, 수백 명의 사제, 수천 명의 신자들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생명 수호를 위하여 철야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수십만의 사람들이 생명 수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과 대법원까지 평화 시위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생명을 위한 노력들은 처음부터 다수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의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국회와 대법원 앞에서 항의하는 평화 시위를 하였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듯이, 오늘날 미국인들은 전국에서 수십만 인파가 모여 “생명을 위하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미국 주교회의는 매년 1월 22일을 생명을 위한 속죄일로 정하고 이날에 모든 본당이 생명을 위한 기도를 바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생명을 위한 기원과 참회를 위한 생명수호미사



모자보건법이란?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따라 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269조에는 낙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973년 소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자보건법이 말 그대로 모자(母子)를 위한 법이라면 좋으려만, 실제로 모자보건법은 자식을 죽이고, 엄마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법입니다. 그 모자 보건법의 핵심인 제14조는 낙태의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태아가 기형 등 유전적 소질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또는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의 임신 등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28주) 내에 일부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줄곧 이 악법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폐지를 위하여 2000년 대회년에 청주교구를 주축으로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하여 124만 명의 서명부를 주교회의에서 국회에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성소위를 거쳐 이 청원을 각각 반려하였습니다. 태어난 사람 특히 여성을 위하여 낙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태아를 죽여도 좋습니까?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악함을 잘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600만의 유다인을 잔혹하게 죽인 히틀러를 단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태아가 기형이라면 주저 없이 낙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구자이든 백치이든, 태어났든 태중에 있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모든 생명은 생존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생학을 주창한 사람이나 처음 산아제한을 주장한 사람은 세상에 열등한 사람이 있고 우수한 사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고 열등한 사람은 적게 낳든지 못 낳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하느님 앞에도 열등한 사람이 있고, 우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 즉 풍진, 장티푸스, 홍역, 일본뇌염, 결핵, 나병 등에 걸렸으면 낙태해도 좋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인이

“저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였으나, 아이를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도생활 대신 아이 엄마로서의 제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나 배우자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고 태아가 같은 병에 꼭 걸리지는 않습니다. 설사 태아가 그러한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질병에 걸려 죽게 된 생명일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는 엄연히 존엄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에는 더더욱 낙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성폭력의 직접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강간 임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는 강간보다 더 큰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태아의 생명권은 여자의 인격권에 비교가 안 되는 우선적인 권리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죽임'이 아니라 '살림'이고, 살림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오래전 보스니아 내전 때 한 수녀님이 적군 병사에 의하여 강간 임신하였습니다. 참으로 원치 않은 임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은 수도원을 나오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였으나, 아이를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도생활 대신 아이 엄마로서의 제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